

#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sup>1)</sup> 및 접경지역 법제도 정비 방안<sup>2)</sup>

강민조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mjik@krihs.re.kr

## I. 서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하여 최근 북한에서도 재난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북한의 재난재해는 식량 및 건강 안보와 직결되어 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삶과 생명권 등의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지구관측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국내외 위성센터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 시공간 해상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재난재해에 준실시간 또는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위성영상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위성영상 기반의 AI와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난재해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재난재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원격탐사기술의 발전, 가용한 국내외 위성의 증가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홍수, 산불, 태풍, 가뭄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재난재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북정책에 따른 국정과제(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하에서 북한 재난재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북 인도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북한 재난재해의 체계적 분석·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북한 재난재해에 대한 위성정보를 수집·관리·분석·활용할 전담 조직이나 통합적인 활용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1) 강민조 외, 「위성영상 기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통일부, 2025a의 결과 발제 및 요약  
2) 강민조 외,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통일부, 2025b의 결과 발제 및 요약

즉, 북한의 다양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 재난재해 관련 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생산·관리·활용할 수 있는 북한 및 재난재해 관련 범부처 협력 기반 종합적·체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의 역할·기능, 구축 형태, 운영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과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70년 이상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필요성하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지역 간담회(2025. 6. 13)를 통해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하여 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대책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남북 상호 간 적대적·대결적 행위를 청산하고 단계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한 실질적·제도적 신뢰 형성을 위하여 접경지역 평화, 주민 안전 지원 강화에 필요한 대책 마련 및 법제 정비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민 피해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하에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2025년에 수행했던 ‘위성영상 기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와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위성영상 기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sup>3)</sup>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의 다양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북한 재난재해 관련 위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생산·관리·활용할 수 있는 북한 및 재난재해 관련 범부처 협력 기반 종합적·체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강민조 외, 『위성영상 기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통일부, 2025a. 결과 발제 및 요약

## 1.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외 행정적·기술적 현황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외 행정적·기술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위성센터의 모니터링 대상, 조직·인력·기능·예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위성센터에는 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②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③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④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 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등이 있다. 국내 위성센터별 기능 및 목적과 함께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센터 설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센터(가칭)’ 설립과 시스템 구축, 활용기술 개발 발굴 및 활용 산출물을 위하여 중요한 벤치마킹 모델이 되며 향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국내 위성센터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위성센터 사례조사: 모니터링 대상, 조직, 인력, 기능, 설립 예산

구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설립준비 기관 및 배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990년대부터의 국립농업과학원 위성영상 활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위성의 운영 및 농업관측 활용 전담부서 신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농림위성 전담 활용조직 필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구축·활용에 대한 전문성, 공공성, 대표성 등을 고려
목적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 활용 연구	지상국 시스템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	국토위성 기반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
조직구성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내 농업위성센터 신설	총: 14명 (이체: 6명, 신규: 8명)	국토위성센터 설립준비 인력 흡수 및 신규 인력 확보(총: 17명)
추진경위	2019~26: 차중위성 4호 개발사업 2020~25: 농업위성센터 구축사업 2024. 5: 센터 설립	2020: 차중2단계 농림위성 개발확정 2020: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로드맵수립 2021~25: 산출물 기술개발연구 2023: 조직확보 추진 2024. 5. 1: 조직 신설 2024. 7. 1: 신규 발령 2024. 9. 9: 개소(준공:7월)	2015: 위성센터 설립 기획 2019. 10: 센터 준공 2019. 11: 센터설립 2020. 11: 국토위성 수집·활용시스템 개발 완료
설립예산	• 건축비: 73억원 • 지상국(알고리즘): 76억원 • 장비인프라: 64억원	• 활용기술 인프라 : 257억원(R&D 118.6억원, 건축 72.4억원, 장비 65.3억원)	• 건축비: 35억원 • 장비구축비: 43억원 • 시스템개발비 : 76.46억원
위성 발사시기	2026년(SpaceX)	2026 또는 2027(미정)	2021.3 : 국토위성 1호 발사
기능 및 임무	농림위성 촬영계획 수립/처리/배포/기본(지면반사도등) 및 농업 융복합활용산출물	위성운영, 위성기획검보정 위성활용전략연구	국토위성 운영, 위성영상 수신·처리·가공·배포

수신 위성 자료	차중4호, Sentinel, Landsat, VIIRS 등	농림위성	국토위성 1호
구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설립준비 기관 및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상청 위성기상부	해양과학기술원
	위성정보기반 신산업·신시장 창출지원 다중위성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고궤도 위성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1970년대부터의 위성기상부 위성수신·처리 노하우를 바탕	1990년대부터의 해양과학기술원 위성수신·처리 노하우를 바탕
목적	지상국 운영 및 기초 활용 연구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 및 운영	해양 환경 (준)실시간 모니터링
조직구성	위성정보연구소에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국가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	기상청 위성기상부가 위성센터로 흡수됨	해양과학기술원의 센터설립준비 인력 흡수
추진경위	2015. 12. 센터 개소식	2008. 8. 센터건물 준공 2009. 4. 센터설립	2005. 5. 센터구축사업시작 2008. 12. 센터설립
설립예산	• 위성정보연구소: 약250억원	• 건축비: 144억원 • 장비구축비: 900억원	• 건축비: 0 (컨테이너 활용) • 장비구축비: 285억원
위성 발사시기	1999.12. 다목적실용위성1호 2006. 7. 다목적실용위성2호 2012. 5. 다목적실용위성3호 2013. 8. 다목적실용위성5호 2017. 차세대 소형위성 2018. 19천리안 2기 2019. 다목적실용위성6호 등	2010. 6. 천리안기상위성탑재체 2018.12. 천리안위성 2A호 발사	2010. 6. 천리안해양관측위성발사 2020. 2. 천리안해양관측위성 2호 발사 성공
기능 및 임무	위성 지상국 시스템 구축/운영 국내외 지상국 안테나 구축/운영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위성활용기술 연구	위성 운영/관제, 수신/처리/배포, 기상예보 분석	GOCI자료 운영, 수신/처리/배포, 해양 활용 연구
수신 위성 자료	KOMPSAT, STSAT, COMS 등	MTSAT-2, NOAA, MODIS, COMS 등	COMS, MODIS, NOAA, SEAWIFS

자료: 강민조 외(2025a), pp.54~55.

이러한 국내 위성센터 사례분석 결과는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센터 설립 이전에 관련 위성영상 활용기술 및 활용모델 개발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통해 타 위성센터 시스템과의 차별적인 임무 및 기능 설정의 중요성과 함께 범부처 기반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수요자 맞춤형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산출물 제공을 위한 ‘활용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센터의 목적·기능과 관련하여 참여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 협력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위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모니터링을 위하여 위성정보를 수신 또는

활용하는 위성센터 및 해외 기관에는 ① 일본(RESTEC/SAPC), ② 미국(NASA/USGS), ③ 호주(GA), ④ 캐나다(NRCan-EGS), ⑤ 유럽(Copernicus EMS), ⑥ UN(UN-SPIDER), ⑦ 38 North 등이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위성자산을 활용해 각기 다른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 분석 기술, 협력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 해외 사례는 위성 플랫폼의 운영 방식뿐 아니라 위성센터의 목적, 기술 적용 수준, 협력 구조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해외 위성센터의 주요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위성영상 기반의 재난재해 모니터링 관련 해외 기관 사례

국가/센터	모니터링 대상	사용 위성	재난재해 활용기술	조직 형태	인력 규모	예산 특성
일본 (RESTEC/SAPC)	홍수, 산사태, 태풍	ALOS-2, Sentinel-1/2, Himawari-8	침수지역 자동 판독, 산사태 검출, 지반침하 모니터링	민관협력	약 170명 (RESTEC)	정부+민간 혼합
미국 (NASA/USGS)	홍수, 산불, 지진, 화산 등	Landsat, MODIS, VIIRS, Sentinel-1/2	ARIA 피해지도, NASA GIS 포털, 재난예측 모델	연방기관 협업	수십~수백 명	연방정부 예산
호주 (GA)	산불, 홍수	Landsat 8/9, Sentinel-1/2, Himawari-9, VIIRS	DEA Hotspots, Waterbodies, 분석준비자료(ARD)	연방기관 중심	약 670명	연방정부 예산
캐나다 (NRCan-EGS)	홍수, 산불, 눈사태 등	RADARSAT-2, RCM, Sentinel-2, PlanetScope	SAR 기반 홍수·얼음 분석, 산불 피해지도	연방기관 중심	소규모 전문가팀	-
유럽 (Copernicus EMS)	홍수, 산불, 지진, 기상재난	Sentinel-1/2, Pleiades, WorldView 등	Rapid Mapping, 위험/복구 매핑, NDWI 기반 자동 추출	EU 공동운영	수백 명 이상 (분산)	EU 공동예산
UN (UN-SPIDER)	지진, 홍수, 가뭄 등	직접 위성 없음 (Copernicus, NASA 등 연계)	없음 (기능: 위성 분석 가이드라인 제공, 국제 중계 및 역량 강화)	UN 산하 글로벌 네트워크	-	UN 예산+기부국 분담
38 North (민간)	북한 내 홍수, 가뭄, 산불 등	직접 위성 없음 (상업위성 이미지 구매)	상업위성 비교 분석, 침수면적/텐트 수 추정 등	민간 분석조직	소규모 애널리스트로 구성	민간기부/재단후원

자료: 강민조 외(2025a), p.80.

이러한 해외 위성센터 사례분석의 시사점은 북한과 같이 고립되어 있고 비공개된 지역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재난재해 외에도 군사·핵·인프라 등 다차원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해석 능력에 중점을 둔 북한 재난재해 위성센터 출범 가능성과 함께 북한 지역의 특성상 38 North의 사례와 같이 시계열 비교·전문가 해석 중심의 분석 체계가 유효한 상황이며, 위성영상 자동 추출 기법보다 전문가의 판독과 비교 기반 수작업 분석을 통해 변화탐지와 의미 해석을 수행하고 있는 38 North의 특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같은 폐쇄국가를 대상으로 국제협력 및 인도지원과 연계하여 위성정보 활용의 방향성과 정보 제공 기능 정립의 필요성 및 기능적 타당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협력 및 소규모 전문가 조직 중심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위성센터 설립 이전 단계부터 데이터 확보 및 콘텐츠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듯 북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체계화하고 대내외적으로 신뢰 가능한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의한 공식 위성센터 설립이 필수적이다.

## 2. 위성영상 기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상(안)

위성영상 기반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전, 목표, 기능·역할 정립을 바탕으로 주요 업무를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을 위해 가용한 위성영상을 수집하여 위성영상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부 등 대북·통일 관련 범부처 기반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의 ‘비전’하에 설정한 3대 목표는 ①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의 안정적·효율적 운용, ② 수요자 맞춤형 북한 재난재해 관련 위성정보 활용 및 서비스, ③ 북한의 적시적 재난재해 대응을 통한 대북정책 지원 활용 및 서비스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북·통일 관련 범부처 기반의 3대 주요 업무는 ① 위성영상 기반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인프라 구축, ② 위성영상 기반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활용기술 및 서비스 개발, ③ 위성영상 기반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기반 조성이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북한 재난재해 관련 분야의 위성영상 및 관련 산출물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수신·분석·저장·활용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범부처 기반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범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 형식과 처리 과정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활용기술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인 수요자 맞춤형 북한 재난재해 관련 위성정보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는 위성영상 기반의 재난재해 모니터링 활용기술과 SW를 개발하고, 재난재해 유형별로 가용한 모니터링 위성영상과 이에 따른 산출물을 서비스하고, 수요자 맞춤형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정보 산출은 R&D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북한 재난재해 관련 위성정보를 기반으로 대북·통일 관련 부처 및 공공·연구기관의 업무

지원과 향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북한 재난재해 유형별 위성정보 서비스와 수요자 맞춤형 위성정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반 조성 부문에 있어서 적시적 재난재해 대응을 통한 대북정책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위성영상을 공유하고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산출물의 정확도 평가를 위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대북·통일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외 북한 재난재해 관련 가용한 위성영상 정보의 공동활용 및 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생산된 북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출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의 고유 임무를 반영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1] 수요자 맞춤형 위성정보 서비스 기반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안)



자료: 강민조 외(2025a), p.142.

### 3.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산출물(안)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 가뭄, 산사태, 산불 등의 재난재해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재해 단계별로 필요한 위성영상 산출물을 분석하고, 이러한 산출물 생산 및 서비스에 필요한 가용 위성영상 제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산출물을 활용해 북한의 기상현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기상요소를 산출·분석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대응·복구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산출물을 통해 피해지역의 상황과 규모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접근성 확보 등 주변 여건과 환경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3〉 재난재해 대응 단계별 위성영상 산출물(안) 및 가용 자원(안)

유형	구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홍수	산출물(안)	홍수 취약지역 지도 (위험지역 사전 파악, 범람 예측)	수위 변화 모니터링 지도	홍수 피해지역 변화 탐지 지도, 수심지도 (수역 범람, 실시간 감시, 피해지역 탐지)	피해지역 평가 지도, 시설물 피해 파악 지도
	가용 위성영상 자원	국토위성, 네온셋, 농림위성, 수자원위성, 아리랑 5호, 천리안 2A Landsat-8/9, Sentinel-1, MODIS 등	국토위성, 네온셋, 수자원위성, 아리랑 5호, 천리안 2A, Sentinel-2, WorldView 등	국토위성, 네온셋 아리랑 5호, 아리랑 3A, Sentinel-1, TerraSAR-X, COSMO-SkyMed 등	농림위성, 아리랑 3호, 3A, Landsat, WorldView, Pleiades, Sentinel-2 등
가뭄	산출물(안)	가뭄 취약지역 지도 (토양 수분·식생 상태 분석)	수자원 변화 모니터링 지도 작물 모니터링 지도 (NDVI 분석)	가뭄 피해지역 탐지 지도 (저수지 변화 지도, 수위 변화 지도)	평가 지도 (가뭄 심각도, 예상 피해 비용, 복구 대상) 농업 피해 평가 지도 (농경지 확인, 재배계획 수립)
	가용 위성영상 자원	국토위성, 네온셋, 농림위성, 천리안 2A/2B, 아리랑 3A MODIS, Sentinel-2 등	수자원위성, 천리안 2A/2B, 아리랑 3A Landsat, Sentinel-2 등	국토위성, 네온셋, 천리안 2B SAR, WorldView, MODIS, 등	국토위성, 농림위성 아리랑 3A, Sentinel-2, Landsat-9 등
산사태	산출물(안)	산사태 취약성 지도 (경사도, 지형 특성 분석)	경사도 및 지형 모니터링 지도	산사태 발생지역 변화 탐지지도 (경사, 변형, 표면 이동)	산사태 복구 필요 지역 평가 지도 (피해 면적 정밀 조도, 도로건물 피해 분석)
	가용 위성영상 자원	농림위성, 아리랑 5호, 아리랑 3A, ASTER, Sentinel-1 등	아리랑 5호, LiDAR, Landsat 등	아리랑 5호, 천리안 2A, TerraSAR-X, Sentinel-1 등	국토위성, 농림위성, 아리랑 3A, Pleiades, WorldView, Landsat, Sentinel-2 등
산불	산출물(안)	산불 취약지역 지도 (산림 건조도 모니터링, 위험지역 감시)	식생 상태 모니터링 지도	화재 발생 지역 변화 탐지 지도, 실시간 연기·불길 탐지 지도	평가 지도, 예상 피해 비용, 식생 모니터링
	가용 위성영상 자원	국토위성, 네온셋, 농림위성, 천리안 2A, 아리랑 3A, MODIS, Landsat, Sentinel-2 등	국토위성, 네온셋, 수자원위성, WorldView, Sentinel-2 등	국토위성, 네온셋, 천리안 2A, 아리랑 3A, MODIS, GOES, Himawari-8, MODIS 등	국토위성, 네온셋, 농림위성, 아리랑 3A, Landsat, WorldView, Sentinel-2 등

자료: 강민조 외(2025a), p.208.

### III. 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sup>4)</sup>

#### 1. 접경지역 피해사례 유형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① 남북 갈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 ②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 ③ 군사 활동에 따른 소음·진동, 지뢰 폭발 등의 피해, ④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지역경제 침체 유형으로 분류<sup>5)</sup>하였다(표 4). 이러한 접경지역 주민 피해 유형별 대표 피해사례는 <표 5>와 같다.

<표 4> 접경지역 주민 피해 분류

피해 유형	주요 내용
남북 갈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	- 대북·대남 확성기 소음 및 진동, 대남 방송,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피해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	-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오폐수, 화학물질 방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 - 군사적 이유로 민간인의 출입과 활동이 상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의 이동 자유와 경제활동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는 유형
군사활동에 따른 소음·진동, 지뢰폭발 등의 피해	- 소음 및 진동 등이 주요 원인으로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 - 사격·폭격·항공 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유탄·폭탄·포탄·지뢰폭발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유형 - 포사격·폭격·저고도 비행 등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충격에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생리적 변화로 폐사·유산·생산성 감소, 이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피해	- 접경지역 주민이 겪는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피해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각종 군사훈련·규제로 인해 토지·주택·농지·어장 등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용이 제한되는 유형 - 군사시설보호, 수도권경비계획, 자연환경보전 등 다수의 중복규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개발 저해 유형

자료: 강민조 외(2025b), pp.19-20.

4) 강민조 외,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통일부, 2025b의 결과 발췌 및 요약.

5) 2020년 접경지역 주민 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및 2024년 연천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접경지역 지자체 실무자 면담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5〉 접경지역 피해 유형별 대표 사례

유형	지역 및 시기	피해 내용
남북 갈등으로 인한 생활피해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및 경기 파주시 장단면 등 (2024년 7~10월)	- 북한의 대남 확성기 심리전 방송으로 사이렌 소리, 늑대 울음소리 등 굉음이 야간에 지속 발생으로 주민 수면 장애와 정신적 고통호소, 고령 주민 건강 악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 (2009년 9월)	-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 하류 수위 급변. 연천에서 야영객 등 주민 6명 사망. 북한의 사전 통보 없었던 탓에 피신 불가 피해 인명 피해 발생
	경기 파주·연천 등 북부 접경지역 (2019년 9~10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발생. 북한에서 5월 ASF 발병 후 남측 접경 농가 돼지에 전파 추정 - 파주·연천 등 11건 확진되며 전국 이동중지 명령. 방역 위해 돼지 약 11.5만마리 살처분(국내 사육두수의 1%). 양돈농가 경제적 타격과 돼지고기 가격 급등 초래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	경기도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유류 오염	- 경기도 파주시의 캠프 에드워즈 미군기지에서는 유류 저장 시설의 누출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철저한 오염 정화와 피해보상 요구를 하면서 갈등이 심화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등 민통선(MDL) 및 DMZ 인근지역	- 군사시설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며, 농업활동 및 농산물 운송에 통제 등으로 인한 이동 제한 및 사회적 고립감 -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 당국은 작전상 이유로 이동제한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힘
군사 활동에 따른 소음·진동, 지뢰폭발 등의 피해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2012년)	- 군 포사격 훈련 소음 100~180dB로 기준치(70dB)의 최대 2배 이상 발생 - 주민 청력 장애 등 건강 이상, 잦은 유산 및 조명탄 불티로 인한 농장 화재 등 재산피해 다수
	인천 옹진군 연평도 (2010년 11월)	-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주민 다수 피해. 민가 지역에 떨어진 170여 발 포탄으로 민간인 2명 사망, 10명 부상, 주택 22채 파괴·소실 - 주민 1,300여 명 섬 밖으로 대피, 생계 및 주거 상실.
	강원도 철원·화천 등 접경지역 (2023년 3~5월)	- 군 포사격 훈련 중 잇단 산발 발생 - 2023년 3월 강원도 화천군의 군사격장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 도중 발생한 산발로 약 35ha의 산림이 소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2010년 7월)	- 김종호우 때 북한 측 목함지뢰 유실→ 임진강 변 폭발 사고. 낚시객 주민 1명 사망, 1명 중상. - 북한 목함지뢰는 나무·플라스틱 재질로 물에 떠내려와 민간인 인명 피해 지속적 위협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지역경제 침체	경기도 연천군 (지속, 1980년대~현재)	- 중복규제로 지역경제 침체. 연천군 면적의 98%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묶여 공장 신·증설 제한 - 1982년 대비 인구 33% 감소, 재정자립도 23.4%로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대학·종합병원 전무, 기업 투자 저조로 낙후
	경기 파주·연천·김포 일대 (2022~24년)	- 대북 긴장 고조로 경기도가 접경 3개 시·군을 '위험구역' 지정 (2022.10.~) - 북한 도발 표적이라는 낙인효과로 투자·관광 감소 우려. 주민들은 지역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비 위축 등 경제 악영향

자료: 강민조 외(2025b), pp.29-30.

## 2. 접경지역 지원·규제 관련 법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법률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낙후지역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로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접경지역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거나 여전히 미반환 공여구역이 존재하므로 접경지역 개발의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의거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반환된 구역과 주변지역 경제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에 목적이 있으며 2008년에서 2026년까지 19년간 접경지역을 포함한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4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원<sup>6)</sup> 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6〉 접경지역 관련 지원 법령

법령명	지원제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 구역 지원사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 설치·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발전사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9. p.113을 업데이트.

다음으로 남북 접경지역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과도한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중복규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접경지역 규제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접경지역은

6)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https://www.mois.go.kr/ft/sub/a06/b06/provisionSpt/screen.do>).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안보적 특수성을 가진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 규제, 환경보전의 규제 등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접경지역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주요 법령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유산법」 등 약 15개 이상의 규제가 있다.

<표 7> 접경지역 관련 규제 법령

법령명	규제제도
1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2 「국토계획법」	'용도지구'·경관지구
3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제도'
5 「농지법」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7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8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9 「환경정책기본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특별대책지역'
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한강수계법)」	'한강수계 수변구역',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11 「산지관리법」,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지관리기본계획'
12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13 「초지법」	초지에서의 개발행위 등 행위제한
14 「습지보전법」	'습지보호구역'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문화유산법)」	'문화재보호구역'

자료: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9, p.110을 보람.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와 함께 중복규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등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순으로 규제 수준이 높으며, 공장 총량제, 대학정원 규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 유치, 인구 유입, SOC 투자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나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보호구역 등의 지정, 행위의 제한,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토지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의

7) 강민조 외,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9.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과 직접경지역은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인통제선 내에서는 출입신고 및 허가가 필요하며 토지이용과 개발은 군부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 3. 지역주민 피해보상 관련 법률

접경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에는 헌법상 피해보상과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 「군소음보상법」이 있다. 헌법 제23조에서는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선언함과 함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며, 제3항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공용계약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이외에 비재산적 손실 등 다양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에 대한 보상은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제70조), 물건에 대한 보상은 해당 물건의 이전비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제75조)한다. 동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공용침해 규정과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유사 공용침해 또는 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는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 법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성질상 준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목적)한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은 접경지역만을 다루거나 남북 갈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다루는 법률이 아니며, 피해지역 범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그러나 제66조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주민이나 특수한 남북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시설비 지원, 소음피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나 보상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4.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지원 법률과 함께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 법률의 개선 또는 개정(안)을 통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표 8〉 접경지역 지원 및 규제 관련 법률 개선 및 개정 방안

구분	법·제도명	개선 및 개정 방안	내용	관련 피해 유형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법 '목적'에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명시</li> <li>• 동 법 '정의'에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 추가</li> </ul>	4가지의 모든 피해 유형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예외 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적용을 완화</li> </ul>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접경지역 주민 피해보상 관련 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장을 신설하여 피해 실태조사,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신설</li> </ul>	4가지의 모든 피해 유형
		MDL·NLL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MDL·NLL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교육 및 정주생활지원금지원</li> </ul>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남북협력기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활용</li> </ul>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피해구제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여구역 지정으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규정 신설</li> </ul>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토지매입 및 장기분할 납부 대상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매입 및 장기분할 납부 대상자를 민간기업까지 확대</li> </ul>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장기임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의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li> </ul>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주한미군 반환 대상지역인 타 지역 등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평택법에 포함</li> </ul>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구분	법·제도명	개선 및 개정 방안	내용	관련 피해 유형
	다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예외 규정 추가	•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계획에 해당하는 지역은 적용을 완화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조세 혜택 및 인센티브 타 특구에 준하여 조정	• 사업시행자 및 입주 기업 유인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 특구 수준의 조세 감면, 입지 지원, 국고 지원 등을 적용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남북협력기금 활용	• 동 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인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역개발을 통한 '접경지역 발전 지원'에 관한 조항 또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	• 남북협력사업을 통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특수상황지역' 대상 조정	•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MDL·NLL 지역을 제외한 타 섬·새만금 지역과의 차별적인 균형발전 지원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남북관계 발전법」	남북 갈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피해보상 내용 규정	• 남북 간 갈등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피해를 받는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구제 규정 추가(제24조)	남북 갈등으로 인한 피해 유형	
	접경지역 주민 피해보상 내용 규정	•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당사자로 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접경지역 주민 지원 및 피해보상 내용을 추가(2장) • 접경지역 주민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5장)	4가지의 모든 피해 유형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서 예외 규정	•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 신설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 시설 관련 보호구역 재설정	• 과도하게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범위로 축소 • 보호구역 및 민통선 지정 범위 축소(민통선 10km → 5km)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군사시설 관련 보호구역 축소 등 건의 체계 정립	• 군 시설 축소 관련 내용을 접경지역 지자체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특별법」 특례사항을 타 접경지역 지자체도 적용하여 협의·건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지역개발 저해 피해 유형

자료: 강민조 외(2025b), pp.141~143.

다음으로 남북 갈등으로 인한 생활피해 보상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재난안전법」, 「민방위기본법」 등의 정비 방안과 함께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 관련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정비 방안을 다음 <표 9>와 같이 제시한다.

〈표 9〉 접경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개선 및 개정 방안

구분	법·제도명	개선 및 개정 방안	내용	관련 피해 유형
피해 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재난 정의에 대한 추가 규정	확성기 소음, 오물풍선 살포 등의 남북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회재난 정의에 추가 규정	남북 갈등 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유형
		지속적 피해 지원 규정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1회성에 그치므로 지속적인 피해 지역 지원 규정	남북 갈등 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유형
		정신적 피해보상 법제화	남북 갈등으로 인한 피해지원 중 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역 등을 포함	남북 갈등 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유형
	「민방위기본법」	‘적의 직접적 위해’ 범위 확대	동 법은 ‘적의 직접적 위해’에 의한 피해로 한정되어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남북갈등으로 인한 피해 유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활동의 피해를 다양화하여 추가	동 법은 다양한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유형을 다양화 피해 유형화 및 이에 따른 보상 규정 별도 신설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유형
		보호구역 주민 손실보상 규정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유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피해 유형 범위 확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 유형 확대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유형
		군비행장 소음과 군사격장 소음의 별도 규정	군비행장 소음과 군사격장 소음은 같은 데시벨일지라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다르므로 별도화하여 규정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유형
		실질적 피해보상 규정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지급(현재 1~3종에 따라 3~6만원의 피해보상금)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유형
		현금성 지급 등의 직접 피해보상 이외 간접 피해보상 규정	현금성 지급 등의 직접 피해보상 이외에 보청기, 건강검진 등의 직접 및 간접 피해보상 방안 확대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 유형

자료: 강민조 외(2025b), pp.143~144.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통한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및 규제 관련 법률과 지역주민 피해보상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경지역 지원 또는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의 주관부처는 대부분 상이하므로, 각 법률상 접경지역 주민 피해지원 및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 주관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즉,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 및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피해 유형에 따라 살펴봐야 할 수많은 지원법률, 규제 법률, 피해보상 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의 주관부처 또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통일부 등 다양하다. 따라서 하나의 법률을 개선하고 개정하는 데는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접경지역에는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복규제의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의 법률만 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의 강력한 몰타위하에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지원과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도 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중앙부처-지자체-지역주민, 연계 협력체계인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접경지역협의체(가칭)’)를 구축하고 이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민조 · 정유진 · 오호영 · 안유순 · 이상준, 『위성영상 기반 북한 재난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통일부, 2025a.

강민조 · 김승중 · 정유진,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통일부, 2025b.

강민조 · 임용호 · 오호영 · 강호제 · 양진홍 · 홍순직 · 박훈민 · 류지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2019.

〈웹사이트〉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rovisionSpt/screen.do>, 접속일: 2025. 12. 1).